

# 제21기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

## □ 목적

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,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으로써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.

## □ 의의

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효과성,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을 기여

## □ 법적근거

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58조,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

## □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

1. 구성시기 : 2021. 3. 30. 까지
2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

구 분 \ 위원별	학부모위원	교원위원	지역위원	계	비고
위원정수	4명	4명	2명	10명	
구성비율	40%	40%	20%	100%	

### 3.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

- ① 임원 :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- ② 소위원회 :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③ 학교내의 자생조직 :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,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, 발언 할 수 있다.
- ④ 간사 :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직원을 간사로 위촉한다.  
(사립학교는 정관에 의함)

## 4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

### 가. 학부모위원의 선출

- ① 선출기간 : 2021. 3. 07. ~ 3. 19. 까지
- ② 선출방법 : 직접선출방법

③ 학부모위원 선거절차 및 세부 추진일정

순번	구분	내 용	방 법	기 간	추진부서 (협조부서)
1	사전 선거 홍보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학교운영위원회설치 목적 등</li> <li>◦선거일정</li> <li>◦선거절차</li> <li>◦위원의 자격, 임기, 자격상실</li> <li>◦당선자 결정 방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가정통신문</li> <li>◦학교 홈페이지 게시등</li> <li>◦다양한 방법으로 홍보</li> </ul>	3. 2 ~ 3. 7	남성여고 행정실
2	선출관리 위원회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임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후보자 등록</li> <li>- 선거홍보</li> <li>- 투·개표</li> <li>- 당선자 공고등 선출업무관장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학교장이 학부모 3명, 위촉위원장은호선 (학운위규정에 따라)</li> <li>◦선출관리위원회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</li> </ul>	3월 7일	교직원 전체회의
3	선거 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선거 일시</li> <li>◦선거 장소</li> <li>◦선출 위원정수</li> <li>◦학부모위원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격</li> <li>- 자격제한 (국가공무원법 제33조)</li> <li>※ 정당인 배제 불가</li> <li>- 겸임 제한(다른학교운영위원)</li> <li>- 등록기간</li> <li>- 등록장소</li> <li>- 입후보 등록서등</li> </ul> </li> <li>◦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사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전 학부모에게가정통신문으로 통지</li> <li>◦학교홈페이지게시등</li> </ul>	선거일 8일 이전까지 (3월 9일)	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4	선거인 명부 작성	◦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3부 작성 (보존용, 열람용, 투표용지 수령용)	◦가정통신문후 학생 성명 작성이후 학부모 사인	선거 공고일 3월 9일	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5	후보자 등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1부작성 (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)</li> <li>◦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자녀 성명,학년/반,기록 입후보자의경력,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 기록 기재</li> <li>◦등록접수대장에 등록,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</li> </ul>	최소선거 7일 이전 까지  3월 12일	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6	결격사유조회 실시	◦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 여부확인 (초·중등교육법 제31조의 2, 2002. 8. 26 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a href="http://www.share.go.kr">www.share.go.kr</a>)를 통한 결격사유 유무 조회 실시 [결격(Y)이 나왔을 경우에 등록기준지 (구읍면)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후 내용 확인]</li> </ul>	후보등록 이후 선거일 전까지  3월 17일	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
순번	구분	내 용	방 법	기 간	추진부서 (협조부서)
7	선 거 홍 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명, 연령, 성별, 경력 등</li> </ul> </li> <li>★ 주소, 전화번호, 주민번호 제외</li> <li>◦ 선거에 관한 사항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거일시, 장소, 방법, 주민등록증, 도장 소지</li> </ul> </li> <li>◦ 입후보자의 소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가정통신문으로 통지</li> <li>◦ 학교홈페이지 게시등</li> </ul>	최소 선거 일 2일 이전 까지 3월 15일	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8	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투표용지 작성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투표용지</li> <li>· 후보자 기호, 성명, 기표란</li> <li>- 선출관리위원장 사인</li> </ul> </li> <li>◦ 선거인명부</li> <li>◦ 투표장 : 강당</li> <li>◦ 준비물: 기표소 (용구), 투표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배부</li> <li>- 공고일 현재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</li> <li>※ 무투표 당선 등으로 투표 미실 시 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</li> </ul>	최소 선거일 까지 3월 18일	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9	투 표 실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입후보자 소견 발표</li> <li>◦ 투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투표방법 : 비밀투표</li> <li>◦ 투표절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거인명부 확인 및 날인</li> <li>- 투표용지 수령</li> <li>- 기표</li> <li>- 투표함에 투여</li> </ul> </li> </ul>	선거일 3월 18일	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10	개 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투표마감 선언</li> <li>- 선출관리위원장</li> <li>◦ 개표실시</li> <li>◦ 학부모참관인 임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투표함 개봉</li> <li>◦ 선출관리위원회 개표</li> </ul>	선거일 3월 18일	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11	당선자 공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다수득표자 순으로 학부모위원정수에 해당되는 입후보 학부모를 당선자로 확정공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당선자 확정 공포</li> <li>◦ 학교운영위원회 선거록에 기록</li> <li>◦ 당선 사실 공고</li> </ul>	3월 19일	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12	선 거 결 과 홍 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당선통지서 교부</li> <li>◦ 선거결과 홍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당선자의 성명, 성별, 경력 홍보</li> </ul> </li> <li>★ 주소,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선거결과 홍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정통신문 발송</li> <li>-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</li> </ul> </li> </ul>	당선자 확 정 이 후	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
#### 나. 교원위원 선출

① 선출기간 : 2021. 3. 2. ~ 3. 19까지

② 선출방법 :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

#### ④ 교원위원 선출과정 및 세부 추진일정

순번	구분	내 용	방 법	기 간	추진부서 (협조부서 )
1	선출관리위원회 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임무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후보자 등록</li> <li>- 투·개표</li> <li>- 당선자 공고 등</li> </ul> </li> <li>◦선출업무 관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학교장이 교직원 3명을 위촉, 위원장은 호선 (학운위 규정에 따라)</li> <li>◦선출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</li> </ul>	3월 7일	교직원 전체회의
2	선거 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선거방법</li> <li>◦일시, 장소</li> <li>◦교원위원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등 선거와 관련된 사항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학교 게시판, 교무실 등에 공고</li> </ul>	3월 9일	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3	선거인명부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교원위원 선거인명부 3부 작성 (보존용, 열람용, 투표용지 수령용)</li> </ul>		선거 공고일 3월 9일	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4	후보자 등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입후보 등록서 1부를 선출관리 위원회에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전체교직원이 합의하지 않은 성별, 직책별 차별 금지</li> </ul>	선거일 3일 이전 까지 3월 14일	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5	선거 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◦선거에 관한 사항 (일시, 장소, 방법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교무실 게시</li> </ul>	3월 15일	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6	투표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입후보자 소견 발표</li> <li>◦투표 및 개표</li> <li>◦당선자 확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투표 절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</li> <li>- 투표용지에 투표</li> </ul> </li> </ul>	선거일 3월 18일	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8	당선자 공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당선 통지서 교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당선자 확정 및 공고</li> </ul>	당선자 확정 이후	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

#### 다. 지역위원 선출

- ① 선출기간 : 학부모, 교원위원 선출 후 3. 30까지
  - ② 선출방법 : 학부모위원회와 교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회 및 교원위원회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  - ③ 선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
    -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: 학부모위원회와 교원위원회
    - 당선결정 정족수 : 과반수의 원리
 

(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)
    - 지역위원의 자격
      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
- (※ 선출 후 결격사유조회 실시, 이상 있으면 재 선출)

-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겸할 수 없음.
- 동창회 인사,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기타 지역사회 인사 등
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

-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#### 라.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

- ① 선출기간 : 2021. 3. 31. ~ 4. 09.

(※ 참고 -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나 교육인적 자원부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에 맞춰 4월 10일 이전에 선출)

- ② 인 원 :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
- ③ 대 상 :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
- ④ 선 출 : 무기명 투표실시

☞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

☞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실시,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일 경우연장  
자가 당선(조례 제8조)